

재건축부담금 사전징수·예치를 위한 계좌개설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발급일	처리기간	7일
신청인	조합의 명칭					
	주된 사무소의 소재지					
	대표자	성명			생년월일	
		주소			전화번호	

「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사전에 징수하여 예치하기 위한 계좌의 개설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(인)

귀하